

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



성 북 구
(자치 행정 과)

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민간 재위탁 구의회 동의안

의안 번호	500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 : 2025년 9월

제출자 : 성북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가. 마을활력소는 누구나, 언제나, 함께 소통하고 다양한 문화를 체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주민공동체 활성화 공간으로, 지역 내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 참여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,
- 나. 현재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운영주체인 ‘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’에 민간위탁하여, 지역주민 및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양질의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음
- 다. 위탁기간 만료일(25.12.31.)이 도래하는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의 운영 사무를 역량 있는 수탁기관에 재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, 『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』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제1항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위탁 대상

- 시설명 :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
- 소재지 :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 234(길음역 지하보도 내)
- 시설규모 : 지하 1층, 140.25㎡(연습실, 프로그램실, 휴게실, 사무실, 창고 등)
- 운영현황

운영방식	운영주체	운영기간	운영내용	공간구성
민간위탁	길음아지트 운영위원회 (대표: 채지연)	2023.1.1. ~2025.12.31.	- 주민 대상 프로그램 운영 - 주민 커뮤니티 활동 지원 - 동아리 시설 대관 등	연습실, 프로그램실, 휴게실, 사무실, 창고

나. 위탁개요

- 위탁사무명 : 길음아지트 마을활력소 운영·관리 사무
- 위탁기간 : 3년(위탁계약 체결일로부터)
-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위원회 심의 및 선정
- 위탁사무의 범위
 - 마을활력소의 운영 및 관련 사무
 - 공간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·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 -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
 - 기타 마을활력소 시설에 대한 안전 등 전반적인 유지 관리
- 소요예산 : 없음(사용료·수수료·비용 등 수입금으로 충당)

다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의제3항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」 제5조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- 추진 필요성
 - 누구나, 언제나, 모두가 함께하는 마을공동체 소통공간을 활성화시키고 협력과 상생을 통한 공동체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상황에 능통한 민간기관이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며,
 - 전문적인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며,
 - 자율성과 자립성을 기반으로 내실있는 민간위탁을 통해 주민 모두의 공간으로써 주민 책임성을 강화하고, 자립적 운영방식을 통해 예산절감 효과를 도모하고자 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

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○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을만들기 지원조례」 제5조

제5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려하며, 주민의 마을만들기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.

○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2.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4. 그 밖의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필요성, 타당성 및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.

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 장관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자치사무의 경우 재위탁을 포함한다.

②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. 다만,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위탁을 포함하여 매 3회차마다 구의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.